

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4. 02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2000.10.01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이법에서 사용·적용되는 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현행 “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 명칭을 “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로 함.
- 제3조제2항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”로 함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03.10.23~11.12

○ 입법예고결과

- 제4조제3항 신설 요청은 반영하지 않음

③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9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

- 제6조제3항 신설 요청은 반영함

③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보증물건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□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를 “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보증물건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 서 광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사회담당 신 선 재
	담당자 성명·전화	최 경 란 (644-221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변경 “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</p> <p>제3조 (융자대상) ①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<u>생활보호대상자</u>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가 2년제이상의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이어야 한다.</p> <p>제6조 (융자금의 상환등) ①~② (생략)</p> <p>(신 설)</p>	<p>“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</p> <p>제3조 (융자대상) ----- -----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 (융자금의 상환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<u>③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시 보증물건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발췌서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률의 폐지)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孀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"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"를 각각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"로 한다.

② 入養促進및節次에 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중 "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施設(이하 "保護施設"이라 한다)"을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(이하 "보장시설"이라 한다)"로 하고,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"保護施設"을 각각 "보장시설"로 하며, 제23조제2항중 "生活保護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保護金品"을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"으로 한다.

③ 義死傷者禮遇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중 "生活保護法이 정하는 教育保護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"로 하고, 제12조중 "生活保護法이 정하는 葬祭保護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"로 한다.

④ 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중 "生活保護法등"을 "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"으로 한다.

⑤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"生活保護法 第3條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"로, "生活保護法 第4條第2項"을 "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"으로 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

⑥ 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중 "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"로 한다.

⑦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2항중 "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"로 한다.

⑧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중 "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"로 한다.

⑨住民登錄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중 "生活保護法"을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으로 한다.

⑩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